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68
----------	-------

발의연월일 : 2026. 8. 13.

발 의 자 : 김 건 · 박정하 · 윤상현
김용태 · 곽규택 · 박충권
한지아 · 김예지 · 조은희
조배숙 · 김선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안전관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공영자전거 사고는 총 2,323건이며, 이 가운데 자전거 자체의 고장·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237건에 달함. 실제 안장·브레이크 고장 등이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으며, 서울시의 경우 2024년 브레이크 관련 정비만 5만 2,525건으로 전체 정비의 17%를 차지함.

그러나 공영자전거 안전점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 점검 주기가 매일부터 월 2회, 연 1회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현행법상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그 밖에 제1항”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생략) <u><신설></u>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u>그 밖에 제1항</u> ----- ----- ----- ----- -----.